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서	기관의 장
신	
람	

www.namwon.go.kr

제21호 2024. 4. 10(个)

훈 령

○ 남원시 훈령 제461호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시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

보

_	1	1	1		Γ	1	
회							
람							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「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시

직인

2024년 4월 10일

남원시 훈령 제 461 호

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단서 중 "시장"을 "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"전라북도"를 "전북특별자치도"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신규면허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실제 남원시"를 "신규면허: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제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"로, "남원시에서 운전한"을 "시에서 운전한"으로, "자이어야 한다"를 "사람"으로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감안하여"를 "고려하여"로 한다.

- 2. 양수·대리운전·상속승계: 신청(신고)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신청(신고)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용차량을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사람
 - 나. 신청(신고)일로부터 계산하여 자가용(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) 차량을 과거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

제21호

보

제7조제1항제2호 중 "남원시에"를 "시에"로 하고, "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"을 "전북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신규면허) ① 개인택시운송	제2조(신규면허) ①
사업의 신규면허는 공개로 모집	
하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	
면허하여야 하며, 공개모집 공	
고는 면허신청 접수기일 15일	
전까지 공고하도록 한다. 다만,	,
<u>시장</u>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	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
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일을	<u>다)</u>
단축할 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개인택시 차량은 시행규칙	5
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원	
시 택시 외부 표시에 관한 운영	
지침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	
다. 또한, <u>전라북도</u> 개인택시 운	<u>전북특별자치도</u>
송사업조합이사장이 발행한 택	
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	
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	
하여야 한다.	
제3조(운전경력 및 거주요건) ①	제3조(운전경력 및 거주요건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도	2
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, 대	
리운전자,양수자의 운전경력 및	

혀 행

시

거주기간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.

- 1. 신규면허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실제 남원시에서 거주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2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중 2년 이상 계속하여 남원시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2. 양수시, 대리운전시, 상속승계시 운전경력은 신청(신고)일로부터 역산하여 사업용차량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거나 자가용(사업자 등록을필한 업체) 차량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거나 또는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(1/2환산)의 무사고 운전경력을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하고 신청(신고)일부터 역산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.

개 정 안

2. 양수・대리운전・상속승계:
 신청(신고)일 기준 주민등록
 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
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사람

----- 사람

- 가. 신청(신고)일로부터 계산

 하여 사업용차량을 과거 3

 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

 사람
- 나. 신청(신고)일로부터 계산하여 자가용(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) 차량을 과거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사람
 - 다. 신청(신고)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(1/2환산)의 무사고

현 행	개 정 안
	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이
	과거 3년이상인 사람
③ 제2항의 자격요건은 당해지	③
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	
역실정을 <u>감안하여</u> 시장이 인정	<u>고려하여</u>
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.	
제7조(대리운전) ① 시행규칙 제1	제7조(대리운전) ①
9조에 의한 대리운전을 하게 할	
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	
하고 수리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면허	2
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은 대리	
운전 기간동안 <u>남원시에</u> 보관	<u>시에</u>
하고 대리운전신고대장에 기	
재한 후 택시운전자격증명(개	
인택시 대리운전)을 <u>전라북도</u>	<u>전북특별자</u>
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	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
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잘	
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	
게시하여야 한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